

감정평가서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정훈
건명	강종수 소유물건 (2024타경6462)
감정서번호	CA250114-1-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컬럼비아감정평가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8(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A-2901호

TEL. 070-4176-2022 FAX. 070-4176-2062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정정우

(인)

감정평가액	이억이천오백만원정 (₩225,000,000.-)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정훈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강종수 (2024타경6462)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1.17	2025.01.14 ~ 2025.01.17	2025.01.17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여	- 백	225,000,000
	합계					₩22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지하철5호선 송정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웰스캐슬” 제 103동 제3층 제303호(전유면적:25.92㎡)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1월 17일로 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1월 14일에서 2025년 01월 17일이며,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5.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의 소재지, 면적, 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 등에 의거하였음.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통상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제시사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에 귀속되는 각각의 배분가격을 함께 병기 하였으니 귀 원의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람.
- 3)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확인하지 못하여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 표준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도시하였는바, 귀 원의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의 개황

1. 단지 건축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6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라길 22 (공항동)]		
명칭	웰스캐슬 103동		
대지면적(㎡)	1097.80	연면적(㎡)	893.81
건축면적(㎡)	177.76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65.44
건폐율(%)	-	용적률(%)	-
건물 층수	지하 1층, 지상 6층	사용승인일	2017.07.25
주구조, 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주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자료출처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2. 대상 물건의 개요

기호	층	호	전유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권(㎡)	건축물대장상 용도
가	3	303	25.92	13.10	39.02	15.11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자료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방법의 개요

감정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성격·감정평가목적 또는 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음.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의 내용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원가법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임.
수익환원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주위환경,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설비 및 층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 유사 물건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인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은 주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된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은 공동주택으로 구분건물인 대상 물건의 성격 및 가격형성과정상 원가방식 및 수익방식의 적용이 곤란하여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제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

가.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시장성에 근거하여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기준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함.

$$\text{비준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 \times \text{면적비교}$$

나. 비교사례의 선정

1) 가격조사 자료

1.1) 인근 유사 물건의 가격수준

유형	가격수준(원/㎡)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위치, 규모, 신축연도, 면적 등 물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유면적당 약 8,000,000 ~ 9,000,000원/㎡ 정도 수준	실거래가격 및 현장조사 등

1.2) 인근 감정평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동, 층, 호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①	공항동 000	103동 2층 000호	28.73	2022.07.21.	260,000,000	9,049,774	경매평가
②	공항동 000	6층 000호	19.00	2024.09.05.	184,000,000	9,684,211	경매평가
③	공항동 000	5층 000호	20.29	2024.08.01.	144,000,000	7,097,092	경매평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동, 층, 호	전유면적 (㎡)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A	공향동 000	103동 6층 000호	30.00	2023.08.15.	275,000,000	9,166,667	거래사례
B	공향동 000	101동 7층 000호	25.13	2024.10.13.	240,000,000	9,550,338	거래사례
C	공향동 000	5층 000호	25.21	2024.09.30.	234,000,000	9,282,031	거래사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감정원)

2) 비교 사례의 선정

대상 물건과 동일한 단지에 소재하고 이용상황 및 제반 특성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A)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다. 사정보정

비교 사례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점수정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하는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며,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적용함.

(서울특별시 강남지역 서남권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기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시점수정치)	비교
	발표 기준시점	지수		
2023.08.15. ~2025.01.17.	2023년 07월	96.5	0.518% (1.00518)	97.0 / 96.5 -1
	2024년 12월	97.0		

* 거래시점 : 2023.08.15, 2024년 09월 지수를 적용함.

* 기준시점 : 2025.01.17, 2024년 12월 지수를 적용함.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사례는 동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주거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석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건물외부요인	건물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비교치
가	1.00	1.00	0.94	1.00	0.940
	본건은 사례 대비 호별요인(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사. 적용단가의 결정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 (원/㎡)
가	9,166,667	1.000	1.00518	1.000	0.940	8,661,3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기호	전유면적 (㎡)	적용단가 (원/㎡)	산정금액 (원)	비준가액 (원)
가	25.92	8,661,301	224,500,922	225,000,000

3. 토지·건물 배분비율

배분비율표는 배분비율 산정방법 중 토지건물 배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 비율은 이 비율표를 참조하되, 집합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위치, 주변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음.

가. 구분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구분		신축~5년		6~15년		16~25년		25년 초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전국		3	7	3	7	4	6	5	5
	서울	4	6	5	5	6	4	7	3
	도심권	5	5	5	5	6	4	8	2
	동북권	4	6	4	6	5	5	7	3
	동남권	6	4	6	4	7	3	8	2
	서남권	4	6	4	6	5	5	7	3
	서북권	4	6	4	6	5	5	7	3

※ 자료출처 : 공동주택의 구분평가지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한국부동산 연구원, 2012)

※ 서울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종량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 :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평가대상 부동산의 토지·건물 배분비율

기호	비준가액 (원)	토지·건물 배분비율(원)		비 고
		토 지(4)	건물(6)	
가	225,000,000	90,000,000	135,000,000	-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감정평가액(원)
가	225,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감정평가액은 비교사례분석, 인근 시세분석,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사례 및 인근 가격수준, 대상물건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본건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지하철5호선 송정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송정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7.25),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5)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북측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9-26)(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6 웰스캐슬 제103동 제3층 제303호
-----	---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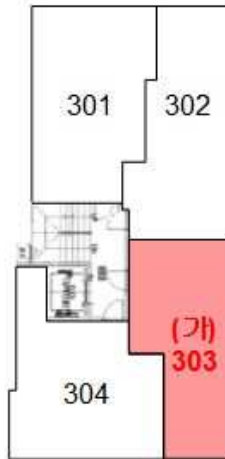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6 웰스캐슬 제103동 제3층 제303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확인하지 못하여 외부관찰 및 인근 탐문조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 도시하였는바, 귀 원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1



2





1



2